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생활환경국장 이영환)

- 가. 제안이유
  -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  -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9조)
  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, 이는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,
- 안 제9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(2021. 8. 26.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51 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2022.12.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2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7년 12월 31”로 연장(안 제2조의2)
- 나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호, 제4조의2 제3항제2호)
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목 현행화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  - 2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9. 15. ~ 10. 5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2조의2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3항제2호 중 “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| 개               | 정                 | 안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조(기금의       | 재원) 서울특별시           | 제2조(기금의         | 재원) -----         |   |
| 영등포구          | 재활용품판매대금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리기금(이하        | “기금”이라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한다)           | 의 재원수입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다음 각 호에       | 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한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               |   |
| 1. 서울특별시      | <u>영등포구(이하</u>      | 1. -----        | <u>영등포구</u> ----- |   |
|               | <u>“구”라 한다)</u> 가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| 직접 수집하는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| 재활용품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| 판매대금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|
| 2. (생         | 략)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        | 같음)               |   |
| 제2조의2(기금의     | 존속기한) 기금            | 제2조의2(기금의       | 존속기한) ----        |   |
| 의 존속기한은       | <u>2022년 12월 31</u>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일까지로          | 한다. 다만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존속기한          | 이 경과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이후에도          | 기금의 존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치 필요성이        | 있는 경우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에는 조          | 례를 개정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하여 기금의        | 존속기한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을 연장할         | 수 있다.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제4조의2(위원회의    | 설치 및 구성)            | 제4조의2(위원회의      | 설치 및 구성)          |   |
| ①·② (생        | 략)                  | ①·② (현행과        | 같음)               |   |
| ③위원장은         | 생활환경국장이             | ③-----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되고,           | 부위원장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청소과장          | 으로 하며,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위원은           | 다음 각 호의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사람            | 으로 구청장이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임명            | 또는 위촉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|   |
| 한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---               |   |
| 1. (생         | 략)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        | 같음)               |   |
| 2. <u>구의회</u> | 의장이 추천              | 2. <u>서울특별시</u> | <u>영등포구의회(이</u>   |   |
|               | 한 구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<u>하 “구의회”라</u>   |   |
|               | 원 1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<u>한다)</u> -----  |   |

|  |  |
|--|--|
| <p>3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 |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준용) -----<br/>-----<br/>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</p> |
|--|--|